2.3.2 산업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정 2012.03.01
개정 2014.10.31
개정 2017.02.06
개정 2017.11.23
개정 2018.11.15
개정 2019.05.24
개정 2023.06.27
개정 2025.05.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이하"산업대학원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1〉

제2조(과정) 〈삭제 2014.10.31〉

제3조(전공) ① 각 학과에는 1개 이상의 전공을 둔다.

② 동일 학과 내에서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학사운영

제 1 절 신입학〈개정 2014.10.31〉

제4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본 대학원학칙 제8조에 의한다.

제5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전·후기로 실시하되 전기 모집 시 입학정원을 충족할 경우 후기 모집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기타 입학전형에 관련된 사항은 산업대학원 입학전형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편입학 및 재입학〈개정 2014.10.31〉

제6조의 1(재입학) ① 재입학은 「학칙」 제14조에 따라 제적된 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따라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4.10.31〉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31〉

1. 재입학원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기타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③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학과주임교수의 확인과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신설 2014.10.31〉

④ 재입학 학기는 제적된 학기로 하며 수업료와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1〉

⑤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퇴학 또는 제적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0.31〉

제6조의 2(편입학) ① 편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2학기, 3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계 여부와 학기 인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4.10.31〉

②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1〉

1. 석사학위과정
   가. 편입학원서 1부.
   나. 대학졸업증명서 1부.
   다. 대학과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석사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10.31〉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사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④ 타 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에 대한 인정은 학과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학과교수회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의 인정학점 범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4.10.31〉

인정학기	석사학위과정
1	6학점
2	12학점

⑤ 재학연한은 제4항의 편입학 이전 인정학기를 포함하여 산정한다.〈신설 2014.10.31〉

제7조(재입학의 불허)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제8조(편 · 재입학의 절차) ① 편 ·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편 ·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② 재입학은 대학원 학칙 제14조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 전의 학업성적 순으로 허가한다.

④ 편·재입학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제 3 절 휴학 및 복학

제9조(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질병, 군입대, 기타사항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진단서 또는 입영명령서 사본, 기타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입대 후 휴학기간 만료전에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신·출산·육아휴학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학이 남성인 경우 1년으로 하며,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가 만5세 이하여야 한다.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1/3이전에 임신, 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휴학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02.06〉

제10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일반 휴학 : 질병, 사고, 가정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2.군입대 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제11조(휴학기간) 삭제 〈2014.10.31〉

제12조(휴학절차)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주 이상의 질병 또는 사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에 입대할 경우에는 다시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제대 복학자는 전역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학기 초 3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에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 4 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14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정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입학금(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 한 한다.) 및 수업료로 한다.〈개정 2014.10.31〉

③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1〉

제15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수업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기당 수강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1.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2.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제15조의 2(연구등록)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지도과목 이수, 학위논문 작성 등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해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휴학자의 등록) 등록기간 내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으나, 등록기간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할 수 있다.

제17조(복학 유예) 휴학사유가 종료되었더라도 수학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학원장은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

제18조(복학자 등록)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19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동일한 교과목에 대한 중복 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0조(수강신청 기준학점)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석사9학점 이내로 한다.

제21조(수강신청 변경·포기)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수강신청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수강) ①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전에 재수강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자퇴 및 제적

제23조(자퇴 및 자퇴취소) ①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학과(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② 자퇴원을 제출한 자가 자퇴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자퇴취소원을 전공(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0.31.〉

③ 자퇴 취소는 1학기는 3월말, 2학기는 9월말 이전에만 가능하다.

제24조(제적) ① 재학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0.31〉
2.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여야 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개정 2014.10.31〉
3.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신설 2014.10.31〉

②〈삭제 2019.05.24〉

제 6 절 학적부 및 제 증명

제25조 (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변동, 상벌, 성적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②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보관·보존) ① 학적부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입학년도별, 학과별로,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년도별, 학과별로 구분하여 전산화하여 보관한다.

② 학적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제증명서 발급) ① 제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

1. 학위수여증명서 : 학위를 수여받은 자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로 당해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예정인 자
3. 수료증명서 :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성적을 취득한 자
4. 수료예정증명서 : 당해학기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성적을 취득예정인 자
5.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6. 재적증명서 : 우리 대학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7. 휴학증명서 : 휴학 중인 자
8. 성적증명서
9. 기타 제증명서

② 제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과과정 및 학점취득

제28조(교과과정 편성) 대학원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확정한다.〈개정 2014.10.31〉

제29조(교과과정 구성·최소이수학점) ① 교과과정은 전공과목과 논문지도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학과는 12학점 이내에서 공통(필수, 선택)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교과목의 학점단위)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교과목의 개설·변경) ① 전공과목은 주임교수가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②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전공(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대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대학의 전임교수나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2. 각종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개정 2014.10.31〉

제33조(담당교과목수 제한) 교수 1인의 학기당 담당교과목 수는 2과목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05.24〉

제34조(담당교수 변경)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과목 담당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담당교수변경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강사위촉)교육과정 운영상 외래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매학기 개강 2주일 전까지 강사추천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매 학기 시작 2주일 전까지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37조(최소 수강인원) 수강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논문지도과목)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연구를 위하여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소정의 논문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② 논문지도 과목은 석사과정은 1P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기준학점과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31〉

③ 논문지도과목의 담당교수는 지도교수로 하고, 이수여부는 합격(P) 또는 불합격(N)으로 평가한다.

제39조(논문대체) ①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 논문 제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논문 제출을 대신하여 추가로 6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논문 지도과목 이수를 면제한다.〈개정 2014.10.31〉

② 논문을 대신하여 추가로 논문대체과목 6학점 수강신청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1.〉, 〈개정 2017.02.06〉

제40조(학점인정) 각 교과목의 성적이 등급 C^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0조의 2(타 대학원의 학점인정) ①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우리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일치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최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9.05.24〉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해당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9.05.24〉

제40조의 3(전과학생의 학점인정) 전과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전입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범위 내에서 학과 주임교수의 학점인정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과통합 또는 학과 내에서 전공이 변경된 자는 종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9.05.24〉

제 2 절 선수과목

제41조(선수과목의 수강대상자)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정규과목 이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하위학위과정과 상이한 학과에 입학한 자.
2. 동종 학과 출신자로서 선수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42조(선수과목의 결정)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과목 이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입학시 소속 학과 주임교수로부터 선수과목 및 학점을 지정한 선수과목 이수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선수과목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선수과목 이수는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6학점 이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과에 위임한다.〈개정 2014.10.31〉

② 선수과목은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이를 정하며, 학사과정에서 선수과목과 동일한 과목이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이수학점을 감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은 대학원 학칙 제17조의 학기당 취득학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4조(선수과목 수강신청)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성적이 C° (70점)미만인 경우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45조(이수학점 처리) 선수과목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논문대체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0.31.〉

제 3 절 평가 및 성적

제46조(시험) (평가) 평가방법은 학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한다.

제47조(성적평가표 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학기 성적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입력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사전에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학사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성적표시) 각 교과목의 성적은 등급으로 표시하고, 평균성적은 가중평균치법을 사용한 평점으로 표시한다. 다만, 추가이수 교과목 및 논문지도과목의 평가 성적이 C^0 이상은 P로, D^+ 이하는 N으로

표시한다.

제49조(평균성적의 산출) 평균성적은 각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제50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학기 성적
2.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 또는 해당과목 성적
3. 삭제 〈2014.10.31〉
4.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51조(성적의 정정)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담당교수가 성적이의신청에 의하여 성적정정을 요청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2조(성적의 이의신청) ① 매 학기말에 제출되는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담당교수가 성적 정정원을 교학과에 제출한다.

③ 대학원장은 이의신청된 성적을 심사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성적의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 절 수 료

제53조(수료학점·성적) ①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기 및 최소이수학점은 4학기 이상 24학점으로 한다.〈개정 2014.10.31〉

③ 수료성적은 평균평점 3.0이상으로 한다.

④ 편입생이 제6조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학기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받은 학기를 정기 등록을 필한 학기에 산입한다.〈신설 2014.10.31〉

제53조의 2(영구수료) 재학연한이 경과한 수료자를 영구수료자라 하며, 영구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0.31.〉

제 5 절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개정 2014.10.31〉

제54조(주임교수의 직무) 주임교수는 해당학과 석사과정의 교과목 개설 및 변경, 강좌개설, 지도교수 제청, 기타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55조(주임교수의 임명) 주임교수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하며,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와 전공이

일치하는 학과 주임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 주임교수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

제56조(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수강신청을 포함하여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한다.

제57조(지도교수의 자격)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전공분야가 동일한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임교원 중 대학원위원회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31〉

제58조(지도교수의 위촉) 각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입학(재입학) 후 둘째학기 시작 전에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59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지도교수의 질병, 장기 국외출장, 휴직 등의 사유로 학생지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신·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지도교수 변경원을 교학과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4.10.31〉

제60조(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삭제 2014.10.31〉

제61조(지도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4.10.31〉

제62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학위청구논문의 연구와 지도를 위하여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절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63조(외국어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전공분야의 연구 수행에 필요한 독해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제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64조(외국어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제65조(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석사학위 2학기 이상등록하고 취득학점 9학점이상으로 재학하고 있는 자는 외국어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는다.

제66조(외국어시험의 응시절차)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전산 입력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시험일자) 외국어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단,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장이 시험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68조(외국어시험 면제) ① 대학원에서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현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TOEFL IBT 75점, TOEIC 650, TEPS 550점 이상인 자
3.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평가시험 4등급 이상인 자(단, TOPIK 또는 W-TOPIK에 한함)

② TOEFL, TOEIC, TEPS 또는 한국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은 시험일 이전 2년 이내의 점수를 적용한다.

제69조(합격인준) 외국어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 합격을 확정한다.

제70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 할 수 있다.〈개정 2023.06.27〉

② 시험 당일 피치못할 사정에 의하여 미응시하거나, 시험시간에 지각한 응시자의 경우 해당차수 외국어시험의 재시험에 응시하려면 학과에서 사유서를 포함한 재시험 요청문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06.27〉

③ 해당 차수 외국어시험의 재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의 성적은 최종성적에서 10점을 감점한다.〈신설 2023.06.27〉

제71조(종합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의 습득정도를 평가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71조의 2(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응시접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차 이상 응시할 때는 정해진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14.10.31〉

제71조의 3(재시험)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교과목에 대하여 재학연한 내에 다시 응시 할 수 있으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신설 2014.10.31〉

제72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평균이 B등급(평점 3.0)이상인 자로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적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전공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73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종합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석사과정 2개 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11.23〉

제74조(시험일자)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시험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제75조(시험위원 및 관리)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의 강의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하고 시험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4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76조(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지도과목을 1P 이상 이수한 자〈개정 2014.10.31〉

제77조(논문 제출시기) 석사과정은 5월과 11월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다.〈개정 2014.10.31〉

제78조(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작성) 심사용 학위청구 논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Word Processor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3. 한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한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제79조(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신청서 1부
2. 학위논문 심사원 1부 〈개정 2017.02.06〉
3. 심사용 학위논문 3부〈개정 2014.10.31〉
4. 소정의 심사료
5. 학위논문 요지(개요) 1부 〈신설 2017.02.06〉

제80조(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심사용 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주심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한 후 논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작성 제출한다.

제81조(학위논문 제출부수) 학위논문심사 통과자는 공히 책자화된 논문 3부를 교학과에 학위청구논문이 입력된 CD 1매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제82조(학위논문제출 시한) ① 석사학위과정은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3조(학위논문 제출) ① 학위수여 확정자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대학원의 소정규격에 따라 제본한 학위논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② 학위논문은 논문심사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 통과자는 도서관 홈페이지 학위논문관리시스템(dcollection)에 최종 학위논문 파일을 소정의 기간에 등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05.24〉

제84조(학위논문심사위원 서명날인) 대학원에 제출하는 학위논문은 학위논문심사위원 전원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5조(학위논문 구비사항) 학위논문에는 다음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1. 겉표지
2. 안지(간지)
3. 속표지

4. 제출서
5. 인준서
6. 목차
7. 국문초록
8. 본문
9. 참고문헌(References)
10. 영문초록(Abstract)

제86조(학위논문규격 및 본문형식) 학위논문규격 및 본문형식은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에 의한다.

제87조(참고문헌의 기재방법) 해당전공의 공인된 작성요령에 의한다.

제88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 위촉)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제57조의 자격을 갖춘 전임교원으로 하며, 주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인(학·연·산 협동과정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하여 4인)을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인에 한하여 교외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5.13〉

제89조(논문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거나 위원의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게 하여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90조(논문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91조(논문심사)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2차로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실시한다.

제92조(논문심사 자료의 제출) 심사위원이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인용한 문헌이나 그 번역본, 참고 될 논문, 도형, 표본,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94조(논문심사 기간 · 기간연장)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공개구술시험 포함)는 개시일로부터 각각 1개월과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5조(논문심사의 판정) 학위청구논문과 공개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학·연·산 협동과정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통과를 판정한다.

제96조(논문심사의 결과보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논문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7조(학위수여의 확정) 대학원위원회는 석사학위의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

고하여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부 칙

시행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규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규칙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3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5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

대학원시험 응시원서

접수번호				사진
학 과		과 정	석 사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입학년도		연 락 처		
등록회수		현재취득학점	( )학점	
응시과목	어학시험	어학시험응시회수	1차.2차.3차	
	종합시험	종합시험응시회수	1차.2차.3차	

년 월 일

지원자 : (인)

주임교수 : (인)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학 번	
학 과		성 명	
응시과목		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함	
어학시험	종합시험	년 월 일	
		접수자 (인)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별지〉서식2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학과　　전공　　학번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영문)	성　　별	남 . 여
논 문 제 목	(국, 한문)		
	(영문)		
논문작성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완료		

(　　)과정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

지도교수　　㊞

학과주임교수　　㊞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

논문 연구계획 내용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일정

참고문헌

〈별지〉서식3

석사학위논문심사원

신청자: 학과 전공 성명(한글): 학번
(한문): 전화

학력: 20 년 월 일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학과입학
20 년 월 일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학과수료(예정)

논문제목(국.한문) :
(영 문) :

본교 학위수여규정에 의거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기자의 지도교수로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도 좋다고 인정하여 추천합니다.

지도교수: (인)
대학원 학과주임교수: (인)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

〈별지〉서식4

석사학위청구 논문요지(개요)서

학과 성명 인

지도교수 인

논문제목:

논문요지: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서식5

논 문 요 약

학과 성명 인

지도교수 인

논문제목:

논문요지: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서식6

석사학위 논문 인쇄 동의서

1. 논문제출자: 학과 학번 성명 (인)
2. 논문제목:

위 논문은 석사학위 본 심사(논문심사 및 구술고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완성논문으로서 타당하므로 인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논문지도교수 성명: (인)
학과주임교수 성명: (인)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

〈별지〉서식7

초 당 대 학 교

산업대학원위원회의결서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 학과 전공 학번 성명

위 사람에 대하여 논문심사 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할 것을 의결함.

1. 결의일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참석위원 : 참석 명, 불참 명

대학원 위원회

위원장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

〈별지〉서식8

저작물 이용 동의서

소 속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공	
성 명		학 번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 핸드폰:
논문제목	국문 : ≪부제: ≫ 영문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초당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 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소속대학에 이를 통보함.

6.초당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 출력을 허락함.

20 년 월 일

저작자 : (서명 또는 인)

초당대학교총장 귀하

〈별지〉서식9 〈개정 2014.10.31〉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논문제출자	과정		학 과		학 번		성 명	
지도교수	학과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0000. . .

서 약 자 : ○ ○ ○ (인)

확인자 : 지도교수 0 0 0 (인)

초당대학교총장 귀하

〈별지〉서식10 〈개정 2014.10.31〉

논문지도 보고서

과 정	석사		박사		통합		학과	
학 기			학 번					
성 명								
논문 제목								

◈ 지도 내용

지도내용	
판정	

. 판정은 Pass는 ‘ P ’로 No Pass는 ‘ N ’으로 기재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